

2025

25년 하반기 LX시험 지금 준비하세요

#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법규1(상)

엠북 공공기관

공부혁명!  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고득점용, 최근 법령 개정 반영
- ★ 공간정보관리법, 시행령, 시행규칙
- ★ 2시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법규1(상)

ISBN : 979-11-7393-014-0

발간일 : 2025-05-07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[by4782@gmail.com](mailto:by4782@gmail.com)

정가 : 17,000원



#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법규1(상)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
(공간정보관리법, 이하 법)

## [목차]

제1장 총칙(p7)

제2장 측량(p23)

제3장 지적(p120)

제4장 보칙(p206)

제5장 벌칙(p248~252)

## [약어]

- 공부는 지적공부

-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

- 부령은 국토교통부령

- 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

- 협회는 공간정보산업협회

- 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
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- 시군구는 (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),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

- 지자체장은

· 시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 또는

· 시도지사, (대도시시장,) 소관청

- 경력등은 기술자의 근무처, 경력, 학력 및 자격 등

- 경력증은 측량기술경력증(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)
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- 고시는 고시 또는 정하여 고시

- 업자는 측량업자(측량업 등록 한 자)

- 지적업자는 지적측량업자(지적측량업 등록 한 자)

- 기술자는 측량기술자

- 지적기술자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

- 수행자는 지적측량수행자

- 소재는 토지의 소재

- 소유자는 (건축물, 구조물 소유자 이외는)

토지 소유자

- 관계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

- 등록정정은 등록사항의 정정

- 중앙위는 중앙지적위

- 지방위는 지방지적위

- 축변위는 축척변경위

## 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방법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 개정 내용

회색은 법령에 없는 내용

붉은색은 공인중개사 bin출문제

하늘색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## 제1장 총칙

1~4조

### 1. 목적

- 측량 기준/절차, 공부, 부동산종합공부

## 작성/관리

- 국토의 효율적 관리, 국민 소유권 보호

## 2. 정의

### 가. 측량

#### 1) 공간정보

- 지상/지하/수상/수중 등 공간상

자연적/인공적 객체 위치정보 관련 공간적

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

#### 2) 측량

- 공간상 점들의 위치 측정, 특성을 조사해



도면/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 위치를  
현지에 재현

- 측량용 사진 촬영, 지도 제작, 건설사업용  
도면작성

### 3) 기본측량

- 모든 측량의 기초인 공간정보 제공을 위해  
장관이 실시

### 4) 공공측량

가) 국가, 지자체, 다음 기관이 관계 법령상  
사업 시행을 위해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

- (과학기술분야 포함) 정부출연연구기관

- 공공기관
-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(이하 지방공기업)
- 지자체 출자기관
-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
- 도시가스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

나) 이외의 자가 시행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 이해/안전 관련 다음 측량

- 1제곱킬로미터 이상 기준점측량, 지형측량, 평면측량
- 10km 이상 기준점측량
- 장관 발행 지도와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
- 1제곱킬로미터 이상 측량용 사진 촬영

- 지하시설물
- 인공위성 취득 영상에 좌표를 부여하는  
2차원, 3차원 좌표측량
-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 있는 사설철도  
부설, 간척, 매립사업에 수반

## 5) 지적측량

-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 
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,  
좌표, 면적 정함

### 가) 지적확정측량

-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 
정함

### 나) 지적재조사측량

-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 표시를 새로  
정함

## 6) 일반측량

- 기본측량, 공공측량, 지적측량 외의 측량

## 7) 측량기준점

- 측량의 정확도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 
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 
등으로 표시해 측량 기준으로 사용

## 8) 측량성과

- 측량을 통해 얻은 최종 결과

## 9) 측량기록

-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 작업 기록

## 10) 지명

- 산, 하천, 호수 등 자연 형성 지형이나 교량, 터널, 교차로 등 지물/지역에 부여된 이름

## 11) 지도

-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 위치, 지형, 지명 등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

## 가) 수치지형도

-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, 편집, 입출력할

수 있게 제작

- 항공기/인공위성 영상정보를 이용한  
정사영상지도 등

나) 수치주제도

-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특정 주제에 관해  
제작

- 지하시설물도, 토지이용현황도
- 토지적성도, 국토이용계획도
- 도시계획도, 도로망도, 수계도
- 하천현황도, 지하수맥도, 행정구역도
- 산림이용기본도, 임상도, 지질도
- 토양도, 식생도, 생태·자연도

- 자연공원현황도, 토지피복지도
- 관광지도
- 풍수해/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
- 재해지도

- 상기와 유사한, 관련 법령상 정보유통과 활용이나 공공목적상 정확도 확보가 필수적인 장관 고시 수치주제도

## 나. 지적

### 1) 지적소관청(이하 소관청)

-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, 시장, 군수, 구청장

· 제주도 행정시장 포함

-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**시**의 시장 제외

- 자치구가 아닌 구의 **구청장** 포함

## 2) 지적공부

-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 표시와  
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

- **정보처리시스템**(이하 **정보시스템**)에

기록/저장된 것 포함

가) 대장은 **토/임/공/대**

- **토**지대장, **임**야대장, **공**유지연명부,

**대**지권등록부

나) 도면은 **지/임/경**

- **지**적도, **임**야도, **경**계점좌표등록부



- 지적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

### 3) 연속지적도

- 지적측량않고
- 전산화된 지적도면 파일을 이용해
-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
- 측량에 활용못함

### 4) 부동산종합공부(이하 종합공부)

- 토지/건축물 표시/소유자, 토지 이용/규제, 부동산 가격 등
- 정보관리체계 통해 기록/저장

### 5) 토지 표시(소지지/면경좌)

- 공부에 토지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, 좌표 등록

## 6) 필지

- 대통령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 등록단위

## 7) 지번

- 필지에 부여
- 공부에 등록된 번호

## 8) 지번부여지역(이하 지번지역)

-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
- 동/리나 이에 준하는 지역

## 9) 지목

- 토지의 주 용도에 따라 구분해 공부에 등록

## 10) 경계점

-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
- 지적도/임야도에 도해,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

## 1) 경계

-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공부에 등록한 선

## 2) 면적

-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

### 3) 토지의 이동

-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, 말소

### 4) 신규등록

- 새로 조성된 토지와 미등록 토지를 공부에 등록

### 5) 등록전환

- 임야대장/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 
토지대장/지적도에 옮겨 등록

### 6) 분할

- 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